

#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4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아동양육시설의 정서·행동 장애, 학교 부적응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, 기존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내 노란꿈터의 상담치료기능을 분리 강화하여 전문적 개입 치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
-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맞춤형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 - 시장방침 제81호('17.4.10,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 플랜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-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는 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와 같은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

-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,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 및 생활아동 학습문제 해소를 위해 대안학교 병설 운영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관련기관 물적·인적자원의 협업능력이 필요함

#### 다. 위탁사무 내용

- 보호대상 아동의 일시보호
- 보호대상 아동의 상담·치료·보호·교육(중·고 대안학교 운영)
- 아동과 그 가정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전문적, 기술적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상담, 집단상담 및 교육
-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-11
- 규모 : 연면적 4,713.91㎡, 지상1~7층, 아동정원 60명
- 시설위치 :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내 노란꿈터(건물)

#### 마. 민간위탁기간 : 2년('18.1.1~'19.12.31)

#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

- ※ 수의계약 사유 : (재)마리아수녀회와 '19.12.31까지 4년간의 위탁 협약이 기 체결 된 상태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 분리 위탁하는 사항이기에 잔여 위탁 기간(2년)을 수의협약

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2,298,511천원

- 종사자 인건비 : 2,153,904천원 [= 46명 × 46,824천원  
(5급 10호봉 기준 연봉)]

- 시설관리운영비 : 144,607천원 [= (1개소 × 500천원 × 12월) +  
(60명 × 192,510원 × 12월)]

## 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2017년 제6차)

연번	부서명	위탁사무명	유형		수탁기관	위탁기간	심의사항	심의결과
7	가족담당관	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	시설	신규 (수의계약)	(재)마리아수녀회	2년	위탁사무 등 타당성 등	적정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

**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, 2016.2.3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8.4.>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
[제목개정 2011.8.4.]

## 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
**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, 2016.8.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8.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- [제23조에서 이동 <2012.8.3.>]

## 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
**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

1.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
2.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
3. 위탁기간
4.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

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2.7.30., 2017.1.5.>

[전문개정 2011.7.28.]

나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: 특이사항 없음